

데이터의 기술적, 법적 의미와 상거래의 이용가능성

강 승 호*

目 次

- I. 서 론
- II. 데이터(Data)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 1. 데이터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2. 데이터와 지적재산권
- III. 데이터(Data)의 기술적, 법적 의미
 - 1. 데이터의 정의
 - 2. 형태에 따른 데이터의 유형 구분
 - 3. 법적 성질에 따른 데이터의 유형 구분
 - 4. 데이터의 법적 의미
- IV. 데이터법의 범위와 체계
 - 1. 데이터법의 의의
 - 2. 데이터법의 범위와 체계
- V. 데이터 3법 및 데이터 기본법(안)의 이해
 - 1. 데이터 3법의 개정
 - 2.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사항
 - 3.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 5. 데이터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 VI. 데이터의 상거래 이용 가능성
 - 1. 데이터 거래소의 역할
 - 2.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
 - 3. My Data(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용가능성
 - 4. 데이터(정보) 보호 산업의 발전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 VII. 결 론

투고일자 : 2021년 11월 19일, 심사일자 : 2021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12월 22일.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변호사, 산업보안관리사, ISO27001 인증심사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전문가

I. 서 론

데이터란, 수치, 기호, 상징 등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전부터 데이터,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인 데이터가 경제·사회 전반에서 수집·가공·생산·처리되고 이와 관련한 혁신적인 사업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2020. 2. 4.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여 향후 핀테크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 등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가 거래되는 플랫폼이 도입되는가 하면, 이미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들은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축적된 데이터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 구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데이터가 기업의 주요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축적한 데이터의 가치를 실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2021. 10. 12.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① 데이터 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데이터자산 부정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안 12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위 평가 기법 및 평가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14조), ③ 데이터를 부동산과 같은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거래사 제도를 만들어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안 23조).

향후 데이터 기본법 및 데이터3법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기업의 가치있는 자산으로 평가되어 데이터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

이하에서는, 데이터의 기술적·법적 의미, 데이터법의 범위와 체계,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 및 데이터 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 데이

터의 상업적 이용가능성(데이터 경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데이터(Data)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1. 데이터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 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다. 소결 - 데이터 이용·활용 VS 데이터 유출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어떠한 사이트에 가입하는 순간, 이용자는 필연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용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모여, 빅데이터화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개개인의 취향, 관심사 등을 추적·관찰·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데이터가 노출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크다.

이용자들은 노출된 데이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어 거래되며 활용되는지 추측하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

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데이터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수집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

즉, 데이터의 이용·활용에 따른 편리함 내지 유용성과 그 이용에 따른 데이터의 유출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자기결정권 보호와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 데이터와 지적재산권

데이터는 지식재산의 직·간접적 소재가 되어 지식재산 창출·활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¹⁾”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²⁾로서 보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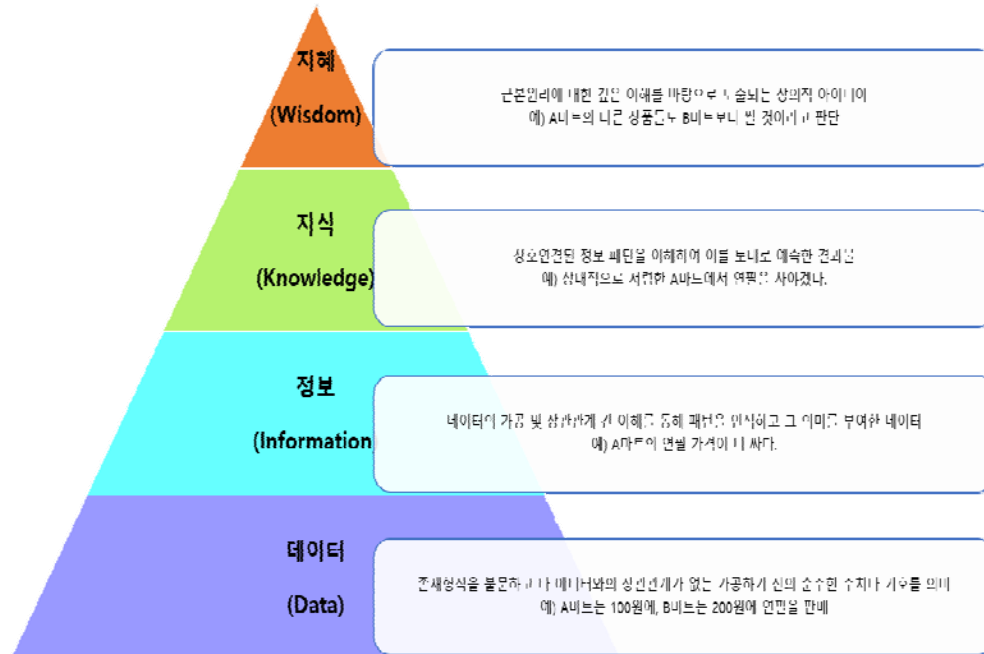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창작성이 없더라도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제19호).

Ⅲ. 데이터(Data)의 기술적, 법적 의미

1.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Data)는 존재 형식을 불문하고 타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없는 가공하기 전

-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하며,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그림 1-1] 지식의 피라미드
출처 - 여성업 외 16인, 데이터와 법, 박영사, 6쪽

의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하는데,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지혜(Wisdom)로 발전하는 DIKW(Data, Information, Knowledge, Wisdom) 계층구조의 기반을 이루며,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로 기능한다.

이에 반해, 정보는 데이터의 가공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며, 지식은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하여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이다. 지혜는 최상위 단계로 근본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이다.

다만, 데이터와 정보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보의 여러 층위 중 하나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적인 규율대상으로서 정보(Information)에는 내용/의미론적 정보, 표시·기호/구문론적 정보, 물리적·유형적 실현물/구조적 정보의 3층위가 있으며, 데이터 경제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원(源) 정보 중 필요한 부분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호화 즉 코딩(coding)한 것으로 구문론적 정보를 가리킨다고 한다.³⁾

2. 형태에 따른 데이터의 유형 구분⁴⁾

(1)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데이터(Unstructured Data)란, 일정한 규격이나 행태를 지닌 숫자 데이터(numeric data)와 달리 그림이나 영상, 문서처럼 형태와 구조가 다른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모바일 환경의 확대에 따라 그 생산량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비정형데이터의 거래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데이터 맞춤형 거래로서, 일종의 컨설팅과 같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거래 방식이며, 둘째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직접 거래로서, 비정형데이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2) 정형 데이터

정형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로서, 대표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로서 RDBMS의 테이블이나 스프레드 시트를 꼽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데이터의 스키마 정보를 관리하는 DBMS와 데이터 내용이 저장되는 데이터 저장소로 구분되며 데이터 내부에 정형데이터의 스키마에 해당되는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는 특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API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등장에 따라 기존관계형 DBMS에서 탈피해 NoSQL (Non-Structured Query Language)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에서는 관계형 DBMS와 NoSQL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⁵⁾

3)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 221~222면 참조, 필자에 따르면 책이나 그림, 건축물이 물리적·유형적 실현물, 즉 구조적 정보라면, 그곳에 담긴 문자열, 음률, 화상, 구조설계 등이 표시·기호, 즉 구문론적 정보이고, 이들의 감상, 해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미, 심상(心想)이 내용, 즉 의미론적 정보에 해당한다. 특허권은 의미론적 정보의 보호에, 저작권이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모방(Nachahmung) 등은 구문론적 정보의 보호에 해당한다. 영업비밀보호는 이들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구조적 정보는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이나(초상권·음성권, DNA 등의 경우) 사람의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4) 정원준/차상욱/박윤석/강준모/이정훈,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제4면~제5면.

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7 데이터산업백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7. 129면.

(3) 파생데이터

거래의 대상이 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 즉 기존의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시켜 파생된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를 가공·분석·편집·통합한 데이터를 파생데이터라고 한다. 파생데이터는 ① 기존의 정형 또는 비정형데이터를 가공·분석·편집한 것, ② 기존의 데이터를 결합·통합한 것, ③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작성·시각화된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3. 법적 성질에 따른 데이터의 유형 구분⁶⁾

가. 데이터와 민법상 소유권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민법상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소유권은 자신의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물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 권리로서, 그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이때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민법 제98조), 구체적으로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지각될 수 있는 유형적 존재인 유체물, 음향·향기·열·빛·원자력·기타 에너지 등의 자연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⁷⁾

나. 데이터의 법적 지위

그러나 데이터는 이러한 물건의 객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지식재산권법 또는 계약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현행법상 데이터의 법적 지위는 ①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②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종합할 수 있다. 나아가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으로서 ④ 특허법상 데이터 관련 방법·물건의 특허, ⑤ 민법에 따른 계약의 대상으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 보호되는 채권적 권리를 생각할 수 있다.

6) 정원준/차상욱/박윤석/강준모/이정훈,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제5면~제6면.

7)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한편, 데이터는 타인의 개인정보, 저작물 및 타인의 기타 권리와 중첩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제하에서 데이터의 권리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법적 권능은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저작권, 기타 채권적 권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데이터의 법적 의미(실체법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론적으로는 데이터는 가공하기 전의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나, 실정법상 아래와 같이 데이터와 정보, 지식은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

(1) 외국 법제

①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EU가 2018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른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데이터를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라고 표현하고 있다.⁹⁾

②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

연방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부존재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분야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 주 입법 또한 마찬가지로의 실정이다.

연방입법¹⁰⁾ -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보호대상 :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는 기록 중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 상징, 지문, 목소리, 사진 등 개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정보

8) 이성엽 외 16,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제6면 및 제9면.

9) EU GDPR, Article 4. Definitions (1).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진한엠앤비, 2018.

주 입법¹¹⁾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 CCPA)

개인정보 개념 : Cal. Civ. Code. Section 1798.140(o)(1)

“개인 또는 가계(household)를 식별하거나, 관련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개인 또는 가계와 연관지을 수 있는 정보로서 성명,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이메일 주소, 물품 구입기록, 인터넷 브라우징 내역, 위치정보, 지문, 개인의 선호나 특징에 관한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다른 개인정보로부터 추론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단,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기록에 공개된 정보, 집합소비자 정보는 제외)

- ③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平成十五年法律 第五十七号)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문서, 도화 혹은 전자적 기록)에 기재·기술되거나 또는 음성, 동작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된 일체의 사항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및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참조).

- ④ 중국 데이터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数据安全法) 및 개인정보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个人信息保护法)

- 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2021. 6. 10. 데이터안전법을 제정·공포하고 2021. 9. 1. 시행하기로 하였음.

위 법에서 “데이터”란 “전자 또는 비전자 형식으로 기록된 정보”라고 정의

- ⑥ 또한, 전인대가 2021. 8. 20.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최종 승인하여 2021. 11.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11)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개인정보보 동향 보고서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18. 6.

로 하였음.

위 법에서 “개인정보”를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한 이미 식별되었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각 유형의 정보들로 정의(동법 제4조 제1항)하면서, 다만, 법 적용에 있어 일정한 정보처리를 통하여 더 이상 특정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기존정보로 복원할 수도 없는 익명화 정보(제69조 제4항)와 개인이 개인적 사유 등을 위해 처리되는 정보(제68조 제1항)는 제외하였음.

(2) 국내 법률

①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 정의)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② 방송법(제2조 용어의 정의)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다. 데이터 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③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④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⑤ 콘텐츠 산업진흥법(제2조 정의)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콘텐츠와 데이터와의 관계

콘텐츠 산업기본법상 콘텐츠의 정의가 넓은 의미로 규정되어 있으나, 콘텐츠는 법 제 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고 콘텐츠 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에 한정되어 법에서의 콘텐츠는 실제로는 위 콘텐츠 산업에 한정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²⁾

⑥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

12) 이성엽 외 16,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제7면.

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개인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¹³⁾

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 즉,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처리나 수동 처리 등 그 형태 또는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추가로 도입되었다¹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이하 ‘추가정보’라 함)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¹⁵⁾

4차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 및 반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12. 제11면.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1.10 제6면.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1.10 제8면.

※ 관련 판례¹⁶⁾

-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판결).

-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는 개인정보인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명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위와 같이, 개인정보에 있어 ‘정보’의 개념을 최광의로 파악하고 있어, 이는 ‘지식의 피라미드’와의 관계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가공하기 전의 순수한 수치나 기호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⁷⁾

- ⑦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른바 ‘데이터 기본법’) 제2조 정의

최근 2021. 10. 12.경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기본법’에서의 “데이터”란 **『다**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12. 제11면.

17) 이성엽 외 16, 데이터와 법, 2021년 박영사 제8면 참조.

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¹⁸⁾

데이터 기본법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생성, 유통, 활용을 통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데이터 보유주체가 공공이나 민간이나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그리고 개인식별성 존재 여부에 따른 개인정보, 비개인데이터 모두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순수히 인격권적인 성격만이 있는 개인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기본법상 데이터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¹⁹⁾

IV. 데이터법의 범위와 체계

1. 데이터법의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를 존재형식을 불문하고 타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없는 가공하기 전의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한다고 보면, 데이터법은 이런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데이터의 접근과 개방 등을 촉진 내지 규제하는 일체의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법이라는 별도의 법전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법의 범위는 데이터의 종류, 형식, 활용 분야별로 매우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데이터 법제의 총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²⁰⁾

18)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2679/detailRP>)

19) 이성엽 외 16,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제8면.

20) 이성엽 외 16,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제9면.

2. 데이터법의 범위와 체계²¹⁾

가. 관리·보유주체가 누구인가

데이터의 관리, 보유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민간이 보유한 민간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나. 개인식별성 여부

둘째로, 개인식별성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와 비개인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정법으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데이터 활용에 있어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다. 데이터 활용분야별 분류

셋째로, 데이터 활용 분야별로 다양한 데이터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 분야, 통신분야, 금융분야, 콘텐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고, 통신분야는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이 있고, 금융분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이 있다. 콘텐츠 분야는 『콘텐츠 산업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법』이 있다.

라. 데이터 법적 보호수단에 따른 분류

한편,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 만약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지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보호,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 부정경쟁원리에 따른 보호로 나누어진다.

21) 이성엽 외 16,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제10면.

특별법에 의한 보호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에는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하는 『저작권법』,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 등이 있다. 부정경쟁원리에 따른 보호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이 있다.

【표】 데이터법의 범위와 체계²²⁾

기준	구분			구분	
기본법(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			특별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기본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법	
공법과 사법	데이터공법			데이터사법	
	데이터기본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데이터활용 목적 위주			데이터 보호 목적 위주	
	데이터기본법(안),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공공데이터			공공 및 민간데이터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데이터기본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인데이터/ 비개인데이터	개인데이터			개인/비개인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데이터기본법(안),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데이터의 법적 보호수단	특별법 보호	지식재산권		부정경쟁원리	소유권 유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안)
데이터 활용/보호분야	통신	금융	보건의료	행정	교육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법, 금융실명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교육법

22) 이성엽 외 16,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제15면.

V. 데이터 3법 및 데이터 기본법(안)의 이해

1. 데이터 3법의 개정²³⁾

가. 개정 이전의 문제점

이전까지 개인정보 관련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정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정보통신망법이 다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활용에 대한 내용을 겹겹이 제한하고 있었다.

사실상 데이터를 기반한 사업화는 신용정보법에 의해서만 가능했는데, 신용정보의 활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한 인허가 사업자에게만 허락하는 Positive 방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소수업체에 의한 과점상황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3개 법의 중복된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데이터산업은 신규사업자의 진출 및 기술적 혁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데이터 3법 개정 의의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데이터 3법’이라 칭하면서 이의 통합적 개정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2020년 2월 마침내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본격적인 데이터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은 스톱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정보활용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사업화의 경로를 확보해 주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관련 규제 내용을 최소화하여 규제의 통일성·일관성을 보장하였다.

23)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23면~제24면.

2.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사항

가. 의의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및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의 개정 이 이루어졌다.²⁴⁾

나. 주요 개정사항²⁵⁾

금융분야 빅데이터분석 · 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가명정보' 이용활성 및 그 부작용 방지 등에 대한 책임강화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이용· 제공 가능 ²⁶⁾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²⁷⁾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과 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 한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²⁸⁾
	개인신용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근거 마련 및 그 평가의 효과 명확화	'익명처리'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정 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하고, 그 평가를 거친 정보는 익명화된 정보로 추정 ²⁹⁾
	정보집합물 결합 및 이동에 관한 규정 마련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정보집합물 ³⁰⁾ 과 결합 할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 도록 함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 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 록 함

24) 국회 개정 법률안 제안서 참조

25) 김보현 외 3인 공저,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2021년 법문사 제30면~제31면 참조

신용정보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신용조회의 정의 세분화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 기업신용조회업의 업무내용을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로 구분
	일부 신용조회업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전문개인신용평가업 ³¹⁾ ’이나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으로서 최소 자본금을 5억원 또는 20억원으로 완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도입 개인신용평가회, 기업신용조회회사 외 신용카드업자가 경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범위 확대	경영업무의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 체계를 정비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의 수행을 허용하여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를 지닌 신용정보회사 등이 빅데이터 초기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
‘My Data’ 개념 도입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신용정보회사 등의 지배주주 변경승인제도 정비 및 임원자격요건 강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 변경승인 제도를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에 준하여 정비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준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

26)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제16호,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제9호의4.

27)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제6항 내지 제8항.

28) 신용정보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의4, 제50조 제2항 제7호의2.

29) 신용정보법 제2조 제17호, 제26조의4, 제40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30)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나목 참조).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신용정보법 제5조 제1항 단서 참조).

'My Data' 개념 도입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신용정보회사의 행위규칙 등 신설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일정한 기업신용조사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정확성·공정성·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성별·출신지역·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u>'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도입</u>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
	<u>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도입</u>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및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 기초자료 등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을 보장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내실화 등 정보주체 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	금융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함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활용 동의에 따르는 효과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 도입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보호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가. 법 제정 배경 및 규정체계³²⁾

개인정보보호법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를 핵심자원으로 하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사물인터넷(IoT) 등 신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 3. 29. 제정되었고, 같은 해 9. 30.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장에서 총칙(제1조 내지 제6조), 제2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7조 내지 제14조), 제3장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사항,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사항(제15조 내지 제22조)을 각 규율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 내지 제34조의2), 제5장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주장(제35조 내지 제39조의2), 제6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 제7장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40조 내지 제50조), 제8장에서 개인정보 단체소송(제51조 내지 제57조), 제9장에서 보칙(제58조 내지 제69조), 제10장에서 벌칙(제70조 내지 제7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 2. 4.자로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루어져 개인정보보호법도 대폭 개정되면서 신설 규정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래에서는 그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요 개정 사항³⁴⁾

(1)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및 익명정보 개념을 명확화하였고, 수집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

32)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57면.

33) 2020. 8. 5.시행(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 개정).

34)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58면.

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에 생체 인식정보 등을 추가하면서 해당 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가명정보 처리시에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침해에 관한 불안감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표】

제1장 총칙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u>'가명처리'라는 용어의 도입을 통해 가명정보 개념 신설</u> - <u>'과학적 연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회2호) 용어의 도입을 통해 가명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8호)</u> - 개인정보 처리 순서의 원칙을 익명·가명으로 정함(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	
제2항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등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개편(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이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위 및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보호기능 일원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공정성 보장제도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등 제도 신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신설	-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개인정보 추가적·이용 제공이 가능한 경우 신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민감정보 내용 추가	- 민감 정보 내용으로 생체 인식정보 추가(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 사진, 얼굴 영상 그 자체가 아닌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통해 사진 등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특정 정보가 생체 인식정보에 해당
	가명정보 처리특례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민간 투자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 보존하는 경우 포함) 등을 위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명정보를 처리가능한 경우를 신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호)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통합	- 개인정보 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동의 획득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 -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 -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제9장 보칙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제외되는 익명정보 개념 신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 익명정보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함을 명시	

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률안(2021. 9. 28. 국무회의 의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중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³⁵⁾.

35)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안이유 발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³⁶⁾

가. 개정의 요지 및 취지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모두 이관하여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유일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인 '본인확인업무를 수행을 위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해서만 간략히 설명한다.

36)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68면.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등 재판매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즉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데이터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용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³⁷⁾

나. 대안의 주요내용³⁸⁾

(1)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

37)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의 제안이유 중 발췌.

38)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의 주요내용 중 발췌.

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3)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4)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10조).

(6)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

(7)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8)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9) 데이터 거래사업자 및 데이터 분석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업자에

금융법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16호)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10)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11)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12)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13) 정부가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14)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4조).

VI. 데이터의 상거래 이용 가능성

1. 데이터 거래소의 역할³⁹⁾

가. 데이터 거래소의 필요성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동인으로서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의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①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 ②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의 산정, ③ 데이터 유통 채널의 부족, ④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 ⑤ 데이터 품질 문제, ⑥ 데이터 가공 문제, ⑦ 데이터 거래 절차 및 방법 미숙, ⑧ 개인정보 처리 기술력 및 예산 부족, ⑨ 개인

39)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141면~제145면., 김은찬/김은영/이호찬/유병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28권 제3호, 2021. 제61면~제64면.

정보 포함 데이터 유통·활용 시 법률지원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나. 데이터 거래소의 의의와 현황

데이터 거래소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한 공급자와 데이터 수요자가 만나 데이터를 사고파는 곳, 즉 데이터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과 같은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 거래소와 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매일방송(MBN)은 2019. 12. 2. “한국데이터 거래소(KRX)”라는 이름으로 첫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 사실이 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2020. . 11.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인 “금융데이터 거래소(FinDX)”를 출범하였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거래시스템만으로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하여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다. 데이터 거래소의 법적 근거

민간 데이터 거래소인 한국데이터 거래소와 금융보안원의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모두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20조 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데이터 거래소는 재화를 사고파는 중개시스템인 네이버쇼핑과 같은 오픈마켓이 하나 더 생겨났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러한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각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율을 받게 되고, 데이터 거래소 그 자체는 전자상거래법상의 규율을 받게 된다.

라. 데이터 거래 과정⁴⁰⁾

마. 향후 전망

데이터 3법의 개정 및 데이터기본법의 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정보보안

40) 그림 출처 ‘금융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

및 데이터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여 초기 데이터 유통 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

가. 정부의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2020. 7. 14.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의 내용은 ①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인프라 강화, ② 금융·의료 등 6대 분야 데이터 활용활성화, ③ 5G 인프라 조기 구축, ④ 5G + 융복합 사업 촉진, ⑤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⑥ AI 융합 전산업 확산, ⑦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⑧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⑨ 노후 국가기반 시설 디지털화, ⑩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이다.⁴¹⁾

여기서 두 번째로 언급된 ‘의료’ 데이터 활성화에 대하여 정부는 다양한 의료 정보의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AI 헬스케어’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보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피력하였으나, 현재 민감성이 높은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질환정보, 성병 정보 등 의료 데이터의 경우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 가명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절차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서 의료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에 있어 많은 걸림돌로 작용되었다.

41)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Mean.do> 게재내용 참조.

이에 ① 보건복지부는 2020. 7. 20.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개정하였고, ② 2020. 8. 5.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며, ③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9. 25.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⁴²⁾

	의료 정보에 관한 기록 열람 등 관련		인간대상 연구 관련	
법률	의료법		생명윤리법	
내용	제21조 (기록열람 등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제19호	“익명화”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 (인간대상 연구의 심의)	인간대상 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인간대상 연구의 심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 연구) 제1항 제3호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법 제15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한 연구

다. 가명정보의 의료법 적용 배제 여부⁴³⁾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42)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147면.

4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2020.,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148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외부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의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는데, 의료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명처리한 정보도 의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 7. 20.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한 진료기록(정보)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명처리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⁴⁴⁾

(1)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가이드라인」과 혼용하여 적용하되,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결합, 활용절차 등에 관해서 우선 적용된다.

(2)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다만,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명처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있을 경우 가명처리하고,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없을 경우 이러한 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하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가명처리의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조치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중인 정

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

보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조치로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재식별 시도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식별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될 때는 특정항목 삭제 등 추가적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한편, 가명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속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면제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안전조치로서 ① 재식별 예방, ②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제공 예방, ③ 투명성, ④ 가명처리 정지요구, ⑤ 윤리적 조치는 물론, ⑥ 기타 가명정보를 활용이 종료된 후 파기, 가명정보 파일 유출·재식별시 대응계획 수립, 가명정보 제공 계약시 재식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과 배상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 삽입 등을 주요 조치 사항으로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

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① 개인 의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가명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점, ② 가명처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③ 법령에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점,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권고'수준으로 격하하고 있다는 점, ⑤ 개인 의료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함으로써 의료 데이터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⁴⁵⁾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하여 적용되는 의료법에서 가명처리를 한 정보에 관해서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여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명처리한 정보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정보의 특성상 민감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45)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150면, 김현경,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법률신문 기고, 2021. 10. 21.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⁴⁶⁾

바. 향후 전망⁴⁷⁾

한국의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하여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제도(EMR) 도입률이 9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고, 현재 쌓여 있는 공공의료 빅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6조건을 초과하는 등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 데이터 3법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기초한 가이드 라인도 속속 나옴에 따라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쌓아만 두고 있던 국내 대형병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법 규정 자체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가능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관한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와 감독이 필요하다.

3. My Data(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용가능성

가. My Data의 개념 및 도입취지⁴⁸⁾

My data라고 함은 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정보의 통제하에 두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 그 정보의 이동, 정정, 삭제, 열람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여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그 상태에서 그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주체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정보 보유기관의 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한

46)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150면.

47)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151면.

48)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법문사, 2021. 제105~제106면, 김수정, 빅데이터,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경제, 민사법학 제96호, 2021.

데이터의 기술적, 법적 의미와 상거래의 이용가능성

동의권을 가졌던 것을 넘어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의해 개정 신용정보법에 반영되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동법 제35조의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 마이데이터 본허가 및 예비허가 58개사 목록('21.10.13. 기준)⁴⁹⁾

※ _____ : '21.10.13일 본(예비)허가 기업



마이데이터 개념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업권	회사명
본허가 (45개사)	은행 (10개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보험(1개사)	교보생명
	금융투자 (4개사)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여전(7개사)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카드
	상호금융 (1개사)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1개사)	웰컴저축은행
	CB사 (2개사)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핀테크·빅테크 (19개사)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舊 레이니스트), 쿠팡, 팀웍,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카카오페이, 핀크, 아이지넷, 뱅큐, <u>디셈버엔컴퍼니자산운용</u>
	IT(1개사)	LG CNS

49) 2021. 10. 13.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예비 허가 (11개사)	보험(2개사)	신한생명, KB손해보험
	금융투자 (5개사)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여전(2개사)	KB캐피탈, 롯데카드
	핀테크 (3개사)	Fn가이드, 유비벨룩스, <u>코드에프</u>

나. 향후 전망

향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여러 곳에 존재하는 개인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 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⁵⁰⁾

현재는 금융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의료⁵¹⁾, 교통, 복지, 에너지, 공공서비스⁵²⁾ 분야로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 문제점

다만, ①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산업인만큼, 보안에 관한 위협성 특히, 해킹이 나 기업의 개인정보의 소홀한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② 정보들이 일부 사업자들에게 집중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③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금융권이나 기업 사이의 정보 공유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제의 정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개별 영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이동권 구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 영역의 경우 개별 공공데이터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서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거나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예외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며, 의료 영역의 경우에는 의료법 등에 따른 법률적인 제약 사항 이외에 개별 의료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의 표

50) 예를 들어, 은행잔고나 입출금내역, 카드 거래명세, 대출금 정보 등을 제공해서 맞춤형 투자제안을 받거나 대출금리 상품을 추천받는 등을 가정할 수 있다.

51)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헬스케어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준화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한 주된 논란이 될 것이다.⁵³⁾

4. 데이터(정보) 보호 산업의 발전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표】 정보보호 관련 제도 현황

	제도	법률	평가기준	수행주체 (주관기관)	적용대상	권고/ 의무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인증기준 (별도고시)	과기정통부 (KISA, 민간인증기관)	권고와 의무대상자 구분	권고/ 의무
2	정보보호 관리 등급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5	평가기준 (별도고시)	과기정통부 (KISA)	ISMS 인증취득자	권고
3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2	사전점검기준 (별도고시)	과기정통부 (KISA, 수행기관)	정보통신 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권고
4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확인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세부기준 (별도고시)	과기정통부 (KISA)	IDC	의무
5	「정보보호조치 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망법 제45조	보호조치 내용 (별도고시)	과기정통부 (KISA)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권고
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지정 기준	과기정통부 (KISA)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신고 의무
7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	국가사회적 중요성, 의존도, 상호연계성, 피해규모 및 범위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KISA)	정보통신기반 시설	권고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분석·평가 기본항목 (별도고시)	관리기관의 장 (KISA, ISAC, 전문업체, 국보연)	취약점 분석·평가기관	의무
	보호대책 이행확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의3	없음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반시설	의무

53) 이성엽 외 16,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제245면.

금융법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16호)

8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지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	지정기준 (별도고시)	과기정통부 (KISA)	컨설팅업체	의무
9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 제10조의2	지정심사기준 (별도고시)	과기정통부 (KISA)	관제업체	의무
10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진단	전자정부법 제24조	수준진단 항목	행정안전부 (KISA)	전자정부대민 서비스	의무
11	행정전자서명 (GPKI) 인증	전자정부법 제29조	행정전자서명	행정안전부 (KISA)	행정기관	의무
12	공인전자서명 (NPKI) 인증	전자서명법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별도고시)	과기정통부 (KISA)	공인인증 기관	의무
13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전자정부법 제45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도고시)	행정안전부 (KISA)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의무
14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	공동평가기준 (별도고시)	과기정통부 (KISA)	정보보호제품 개발업체	의무
15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영향평가 기준 (별도고시)	행정안전부 (KISA)	공공기관	의무
16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및 점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	세부심사기준 (별도고시)	방송통신위원회 (KISA)	위치정보 사업자	의무/ 권고
17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점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세부심사기준 (별도고시)	방송통신위원회 (KISA)	본인확인기관	의무/ 권고
18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손해배상기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19	공공기관 수준진단		평가항목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공공기관	의무
2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 공표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	1천만원 이상 과태료 10만명 이상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2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평가기준	과기정통부	민간기업	권고

위와 같이 현행 정보보호 관련 제도는 무수히 많고, 앞으로도 정보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증심사원(PI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ISO 27001(국제정보보호표준)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홍보하려는 관공서, 기업, 대학, 종합병원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 산업 또한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인력 양성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Ⅶ. 결 론

이상과 같이 데이터의 기술적·법적 의미, 데이터법의 범위와 체계,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 데이터의 상거래 이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기존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이다. 자율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20. 8. 5.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데이터 기본법이 곧 시행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처리의 도입, 합리적 관련성에 따른 동의 없는 정보 사용, 데이터 결합 제도의 도입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획기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 등을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www.kisa.or.kr)는 『2022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를 발표하였다. 위 이슈들의 내용은 ① 금융을 넘어 쏠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마이데이터, ② 데이터 가치를 높여주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 ③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조화, ④ AI 등 신기술 기반 데이터 시대, 新 개인정보보호 이

슈 심화, 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 증가에 따른 과징금 기준 합리화, ⑥ 삶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위협,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양면성, ⑦ 비대면시대, 온라인플랫폼 이용 확대와 개인정보보호이다⁵⁴⁾.

위와 같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데이터 시대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본격화될 것이며,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활발히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54)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2022.

참 고 문 헌

- 이성엽 외 16인,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 김보현 외 3인, 【데이터경제와 디지털 금융 - 주요법률과 이슈】 , 법문사, 2021.
-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
-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2018년 6월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 정원준/차상욱/박윤석/강준모/이정훈,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12.
- 김은찬/김은영/이효찬/유병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정보화정책 제28권 제3호. 2021.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중 국회입법현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발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 9. 25.
- 김현경,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 법률신문 기고, 2021. 10. 21.
- 김수정, 【빅데이터,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경제】 , 민사법학 제96호, 2021.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2022.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1. 10. 13. 보도자료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판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국문초록>

데이터의 기술적·법적 의미, 데이터법의 범위와 체계,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2022년 시행될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 데이터거래소, 보건의료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 마이데이터 산업, 데이터 정보산업 등 실제 사례에서의 데이터의 상거래 이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기존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이다. 자율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20. 8. 5.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데이터 기본법이 곧 시행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처리의 도입, 합리적 관련성에 따른 동의 없는 정보 사용, 데이터 결합 제도의 도입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획기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 등을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2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를 발표하였다. 위 이슈들의 내용은 ① 금융을 넘어 쏠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마이데이터, ② 데이터 가치를 높여주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 ③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조화, ④ AI 등 신기술 기반 데이터 시대, 新 개인정보보호 이슈 심화, 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 증가에 따른 과징금 기준 합리화, ⑥ 삶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위협,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양면성, ⑦ 비대면시대, 온라인플랫폼 이용확대와 개인정보보호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데이터 시대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본격화될 것이며,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활발히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정보보호, 마이데이터, 보건의료데이터

<抄録>

데이터의技術的、法的意味および商取引の利用可能性

姜 丞 鎬*

データの技術的・法的意味、データ法の範囲と体系、2020年改正されたデータ3法の主要改正内容及び2022年施行されるデータ基本法の主要内容、データ取引所、保健医療データの結合及び活用、マイデータ産業、データ情報産業など実際の事例でのデータの商取引利用可能性について調べた。

韓国は世界最高水準のインターネットネットワークをベースにリアルタイムで広範なデータが蓄積されており、これを利用した既存産業の革新と新産業創出のための各界の努力が盛んだ。自律自動車、スマートホーム、スマートシティ、遠隔医療、フィンテックなどの分野で眩しい発展を遂げている。

これに加え、2020.8.5.個人情報保護法、情報通信網法、信用情報法改正案などデータ3法改正案が施行され、データ基本法がまもなく施行されるなど新たな転記を迎えている。個人情報保護法は、仮名処理の導入、合理的関連性による同意のない情報の使用、データ結合制度の導入など、データを活用する画期的な制度を導入した。信用情報法は、個人信用情報転送要求権、本人信用情報管理業(My data)などを導入してデータ活用を強化している。

最近、韓国インターネット振興院は『2022個人情報保護7大 이슈』を発表した。上記 이슈の内容は①金融を超えて全産業分野に広がるマイデータ、②データ価値を高める仮名情報活用拡散、③新技術環境における個人映像情報保護と産業的活用の調和、④ AIなど新技術ベースのデータ時代、新個人情報保護問題の深化、⑤個人情報保護違反行為の増加による課徴金基準の合理化、⑥生活の利便性とプライバシーの脅威、グローバルビッグテック企業の両面性、⑦アンタクト時代、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の利用拡

* 弁護士

금융법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16호)

大と個人情報保護である。

人工知能(AI)、アイオーティー、ブロックチェーンなどのデータ時代新技術の発展により、データ産業という新しい産業が本格化し、マイデータ、仮名情報産業を中心にデータを活用するビジネスが活発に現れることを期待する。

主語：データ、個人情報保護、仮名情報、情報保護、マイデータ、保健医療データ